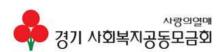
남양주시복지재단 공모사업

파트너 기관 교육

2022. 3. 10(목)



순 서

- 1. 사업수행기본원칙
- 2. 배분금 수입 및 지출 처리절차
- 3. 사업 및 예산변경
- 4.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안내
- 5. 사업평가 및 회계평가
- 6.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안내



2. 배분사업수행 기본원칙

사업수행기본원칙(p9)



- ▶ 최종 확정된 조정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내용과 예산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진행
- ▶ 사업 및 예산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금회와 협의 후 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후 변경된 내용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사업수행기본원칙

배분지원금 회계처리 기본 원칙(p9)

- ▶ 기관의 일반 회계와 구분관리
- 모금회 지원금은 기관의 예산 총계에는 포함하되, 별도 관리하도록 함
- 지원금에 대한 통장과 회계장부, 관련 증빙 서류 모두는 기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후 비치
- ▶ 지출과 관련 문서의 일치
- 통장 입출금내역과 현금출납부, 수입/ 지출결의서는 상호 일치해야 함
- ▶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등 법규의 준수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근로기준법,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세목 내에서 날짜순!!!!!(p10)

구분	1차년도				
뫄	세목	신청금액	자부담		
	총 계	30,000	20		
	급여	10,569	1		
인 건 비	사회보험료 부담금	1,013			
	소 계	11,583	. E S		
٨ŀ	방문 사후관리를 통한 재학대 예방	12,490	-		
집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돌봄 네트워크 구축	4,600	- -		
	소 계	17,090	27		
학교애원교	관리운영비	1,326	228		
HI	소 계	1,326	-		

		기본급여		사회목지사	8.954.496	29.85	-	2	
		NEBO		1,492,416원×1명×6개월	0,804,480	20.00		-	
인건	경기북부	가족수당	11,583,173	배우자 40,000원 자녀-첫째 20,000원 자녀-둘째 60,000원 120,000원×1명×6개월	720,000	2.4	ij	- 1	-
Ы	견문기관	명절수당		명절수당 895,450원×1명×1회	895,450	2.98	10	ı	-
		사회보형료 부당금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당금 154,565원×1명×5개월	1,013,227	3.38	-	30	-
	- 10	702000 E		240,402년 이 김 이 1개를					
_	3	: A	11,583,173		11,583,173	38.61	-	-	+
				교육비 (1급강사 2시간 기준) 400,000원×1명×1회	400,000	1.33	_	-	-
	방문	사후관리 를 통한 활동 12,490,000		활동비 50,000원×60casex3회	9,000,000	30.0	1	-	-
	를 통한 일본을러스		교통비 6,000원×60case×3회	1,080,000	3.6	-	ï	-	
			상해보험료 30,000원×7명	210,000	0.7	£	1	-	
			학대피해노인 지원 물품구입비 30,000원×60case	1,800,000	6.0	÷	-	~	
사업		유리기년 통합 사례회의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 600,000원×3회	1,800,000	6.0	1		-
HI		홍보활동		홍보물품제작 500,000원	500,000	1.67	30	0	+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긴급지원비	4,600,000	건급자원비 (치료비, 연계비 등) 1,000,000원	1,000,000	3.33			
	돌봉 플러스	간당회		간당회 400,000원×2회	800,000	2.67	-	-	-
	구축	사업 최종평가회		사업 최종맹가회 500,000원	500,000	1.67	4	1	-

2. 배분금 수입 및 지출처리절차

배분금 수입처리절차(p13)

수입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수입 처리 절차



배분금 수입처리절차

수입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① 지정후원금 수입 처리함(13p)
- 수입과목은 : 관, 항-후원금수입 / 목-지정후원금
- ② 배분금 관련 이자 수입 발생 시 처리방법(15p)

사업 기간 내 이자 발생분 ► 수입결의서 작성 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출 사업 기간 외(잔여사업비 반납 이후) 이자 발생분 ► 기관 잡수입 처리함

- ③ 지출 오류금액 재입금 처리방법(56p)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되 비고란에 '재입금' 명시

배분금 수입처리절차

		수 입 결	의 서			
			담당	팀 장	부 장	관 장
	관	후원금수입		작성일	2018년	1월 8일
수입과목	항	후원금수입		2018년 1월 8일		
	목	지정후원금수입		수입일	(적요란	
C2 - 3-249 - 3-249	금	육백만원정		3	비고	
수입금액	₩	6,000,000원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배분금 총 1천 만원 중 상반기 배분지원비 (사업명 :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프로그램)

** 수입결의서 뒤에 첨부할 서류 : 통장사본 1부.

배분금 지출처리절차(p19)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 지출은 반드시 사업비 통장에서 지출해야 함
- ▶ 지출 처리 절차

내부기안 작성 및 결재 지출 행위 발생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 현금출납부 기록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편철

▶ 유의사항

- 전용 결제카드로 결제 하는 것을 원칙
- -모든 지출은 관련 내용의 내부 기안과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함
- -증빙자료 구비
- 내부기안 및 지출결의서는 날짜 순서로 편철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과 수신자 : 내부결재 (경유) : 제 목 : 공동모급회 지원사업(청소년 지원봉사학교 사업) 사행의 건 ㅇㅇㅇ배분 2013-215호(2013.1.10)에 의거 이래와 같이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을 일시하고사 합니다. - 아 래 -1) 사 업 명 : 청소년 지원봉사 프로그램사업 2) 사업기간: 2013,1,1 ~ 2013,12,31 3) 사업내용 :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 4) 총지원금 : 총12,000,000원 5) 세부내용 : 별첨 계획안 참조 6) 지출근거 : 관)사업비 항)후원시업비 목)청소년복지사업비 별첨 : 1) 청소년 지원봉사학교 사업계획서 1부 2) ㅇㅇ모금회 지원결정 공문 사본 1부, 끝,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 ★담당 협조자 000 -(0000, 00, 00) 우 000-000 서울특별시 이구 이동 번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 02) 000-0000 전송 02) 000-0000 담당자 이메일 주소

지 출 결 의 서 담 당 팀 장 부장 관장 작성일 과 사업비 X 2015년 5월 2일 (돈쓴날) 출 후원사업비 과 2015년 5월 2일 지출일 목 목 야간보호 프로그램 (적요란 참조) 비교 금 육십만원정 지출금액 배분지원금 ₩ 600,000원정 적 品 00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사업명:000000) - 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사료 : 600,000원(50,000원×3시간×4회) - 지급방법 : 무통장 인금 **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할 증빙자료 : 무통장입금 영수증 강사료 지급증 내부기안 사본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① 적격증빙 수취(p20)

- 배분사업 전용카드 매출전표
-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계산서(간이과세자)
- -기관/ 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로 발급 된 현금영수증
-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사용 지양) → 누적금액 또는 집행횟수에 따라 회계 감점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② 배분금 지출의 원칙(p21)

- 기관명의의 모금회 지원사업 전용카드로 결제
- 현금 사용 시: 지출결의서에 현금지급 사유를 명시,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③ 증빙자료 구비의 원칙(p21)
- -1건 1문서 주의 원칙
- 편철순서: 날짜 순서로 편철.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적격증빙 →기타증빙서류
- -모든 지출은 관련 내용의 내부기안과 그 기안을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함
- 지출결의서는 통장 일자 기준으로 편철
- 수입결의서는 별도로 관리함
- ④ 이체수수료와 식대(p22)
- 사업수행을 위한 물품대금 송금관련 이체수수료 사업비
- -A교육을 위해 먹은 식대 사업비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⑤ 예산집행 관련 유의사항(**p22**)

구분	내용
자료집 제작	□ 사랑의열매 로고사용, '후원'이 아닌 모금회 '지원사업'임을 명시 □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 출판물 판권은 반드시 모금회와 사전협의 □ 지원사업과 관련한 출판물의 저작권은 모금회에 있음 □ 예산지출시 자료집 등인쇄출판물 사진을 찍어 첨부
현수막/ 기념품 제작	□ 사랑의열매 로고사용, '후원'이 아닌 모금회 '지원사업' 임을 명시 □ 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현수막 전체 사진 첨부
장비 또는 비품	□ <u>기본자산이되는범용성기자재구입은지양</u> 하며, 필요시시전에모금회담당자와협의 □ <u>장비취득이나 30 만 원 이상의 비품의 경우</u> 비품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명시 및 로고삽입(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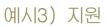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0조의3. 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 자료집 및 제작물, 홍보물 등 제작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거나 로고 삽입
- -홈페이지(http://gg.chest.or.kr) 경기지회소개>사랑의열매 소개>CI/ 로고 메뉴에서 다운

예시1) 000사업은 이웃사랑성금으로 남양주시복지재단과



예시2) 000사업은 남양주시복지재단과 과 🎝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급회 가 지원합니다.







⑥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서류(p23)

항목	추가 구비서류				
단순인건비	활동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근무일지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비	강사이력서, 강사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회의비	회의록, 회의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자문비	슈퍼비전 기록지, 자문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카드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 / 식비, 일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행사비 지출	카드매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エレコエレ エリエレ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자료집 제작	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자료집 사진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물품제작/ 구입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구입물품 전체 사진				
현수막 제작	카드애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부착된 현수막 전체사진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비품 구입	비품관리대장 중 구매한 부품이 포함된 쪽 사본, 비품 사진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⑦ 원천징수(p24)

- 강사비 등 기타소득을 구성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구분	2018. 4. 1 이전	2018.4.1.~2018.12.31	2019.1.1~
필요경비율	80%	70%	60%
원천징수세율	4.4%	6.6%	8.8%
과세최저한도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달 내에 지급총액이 125,000원 초과인 경우 원천징수 진행

- 사업소득: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지급액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3.3%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⑧ 사업비 목 회계처리(p36)
- 가. 식사비
- 예산편성기준표(p28) 준수(1인기준 15,000원
- -식사비 산출표 작성 (장소, 결재시간, 참석자, 집행)

			지출결의,	H		
			담당	팀장	사무국장	회 장
			이담당			김대표
ر ا	관	사일	걸비	작성일 (지출일)	2021년 2	2월 1일
출 과	항		H 회계 관련 사업	지급일	2021년 2	2월 1일
목	목		3회 회계연구 1그램	(배분금 인출일)	(적요란 칟	· 조)
지출		금 사만 원정	4		비고	
금액	₩ 40,000 원정					
	- 적 요					

연구회의 식사비 지출

지급방법: 체크카드

지출내용: 회의 시 외부참석자 식사비

첨부: 매출전표, 식사비 산출표, 내부기안, 회의록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⑧ 사업비 목 회계처리
- 나. 강사비(p39)
- 예산편성기준표 준수(p26)
- 강사비에 대한 원천징수 후 지급
- -기관의 직원은 강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강사비지급증빙과서류

- -지출결의서
- -적격증빙:지급증,계좌이체확인증
- ※ '거래내역서'는송금자,수신자내역을수정할수있으므로증빙자료로불인정
- -근거자료: 강사비산출표, 강사이력서
- -시실 확인: 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⑧ 사업비 목 회계처리
- 다. 단순인건비(p42)
- 예산편성기준표 준수(p27)
- 단순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후 지급
- -근무일지 첨부 필수
-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라. 현수막(p44)
- -실제 설치사진이 보이도록 사진 촬영(시안X)
- 마. 원고료(p44)
-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
- -강사비와 중복 지급 지양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 ⑧ 사업비 목 회계처리
- 바. 자료집(p46)
- 제작물 사진 및 원본 제출
- 사. 다과비(p48)
- 예산편성기준표 준수(p28)
- -1인10,00원
- 다과비 산출표 반드시 작성
- 아. 회의참석비와 회의비(p48):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내부직원에게 지급 불가

지출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⑧ 사업비 목 회계처리

자. 워크샵비(p53)

- 예산편성기준표 준수(p28)
- -1인100,000원(1박2일기준숙박비, 식비)
- 사용한도가 불가피한 경우 남양주시복지재단 사전 승인
- 진행비는 별도 편성

기능보강 관련 유의사항(1 인견적 제출가능)

□ 1 인견적: 본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기본적으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구입

나라장터에 없을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도 없을 경우, 일반업체에서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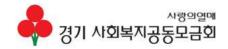
일반업체에서 구입시 가격비교 증빙(인터넷 가격, 비교견적서 등 포함) 별도 제출

기능보강 관련 유의사항

사업 및 예산 변경 절대 불가반드시 조정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으로

▫ 사업진행 전후 사진 필수

3. 사업 및 예산변경



사업 및 예산변경(p61)

- · 물가변동, 참여 클라이언트 수의 증감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달성이 어렵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단, 예산항목의 재설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 단, 기능보강의 경우 사업 및 예산변경 불가
- · 잔여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변경 지양
- · 사업내용 변경 가능 시기는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로 한정하며, 변경사업내용은 진행 2 주일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 ▶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절차

사업변경 관련 내부논의 남양주시복지 재단 협의 변경요청사항 공문 발송 모금회 승인공문 접수

승인내용 사업반영

- 변경요청사항 공문과 **사업변경승인요청서, 수정사업계획서**를 함께 발송함

- ▶ 사업내용 변경 범주
 - 단위사업 신설 및 삭제
 - ㆍ 사업운영 일정 조정
 - ㆍ 사업기간 조정(사업 연장 등)
 - ·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수행인력, 참여인원, 시행횟수 및 투입시간 조정
 - ㆍ 서비스대상 및 선정기준, 서비스 지역의 조정
 - ·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성과지표 등)의 조정
 - · 홍보계획의 조정
- ▶ 사업변경 불가 사항
 - · 사업목적(목표)이 변경되는 경우
- ㆍ세부 프로그램의 삭제 및 신설이 지나친 경우
- · 인건비 목의 경우 예산조정이 불가함

사업 및 예산변경 원칙

		관	사업비				
		항	공동모금회 "〇〇〇	공동모금회 "○○○사업"사업비			
	목	세목	Л	계 산출근거			
	인	전담인력		급여 1,000,000원*12월=12,000,000원	인건비 '목'		
	인 건 비	인건비	14,500,000	4대 보험료 1,500,000원	- 한단비 '북 '문 - 예산조정이 불기		
	Bl CT-			퇴직적립금 1,000,000원	MICTONIE		
	[a	소 계	14,500,000		14,500,000		
				안내지 제작 500원* 500부	250,000		
		참가자모집	000 000	홍보물 발송비 500원*300건	150,000		
	사	➤ 홍보비	900,000	현수막 50,000*2개	100,000		
971				Я	500,000		
목간 전용	업	사 업 비 교	2,470,000	강사비 100,000*2시간*4회	800,000		
)	비			현수막 50,000원*1개	50,000		
	23	> ₽ > ₽		교재비 5,000원*40권	200,000		
		> II		간식비 1,000원*30명*4회	120,000		
목간				Я	1,170,000		
전용 관리	3	소 계	3,370,000		3,370,000		
	관리	사무용품	360,000	문구류 및 사업관련 소모품 30,000원*12월	360,000		
	운영비	구입	000,000	А	360,000		
	1 8	소 계	360,000		360,000		
	8	총계	18,230,000		18,230,000		

사업 및 예산변경 원칙(p62)

▶ 예산변경 모금회 검토 및 승인요청 기준

구분	내용		
배분금(1 개소)	500만원 이하	500만 원 초과	
예산변경 범위	100만 원 이하(누적금액)	20% 이하(누적비율)	
예산변경 항목	세목 간, 세세목 간	세목 간, 세세목 간	
	단, 예산변경 누적금액이	단, 예산변경 누적금액이	
비고	총 배분금의 50%	1 천만원 초과시는	
	초과 시는 모금회 승인 필요	모금회 승인 필요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없는 경우, 세목 간만을 예산 변경 항목으로 봄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목간 전용' 및 '신규 세목과 세세목 추가' 시에는 모금회 승인필요

기타 변경사항 통보(p64)

- ▶ 기관정보 관련 변경사항
- 전화번호, 주소, 운영법인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1 주일 내에 남양주시복지재단에 변경내역을 공지하여야 함(변경 전/후 내역 기재)

- ▶ 사업 주 담당자 변경 보고
- 담당자 변경 시 신규 담당자 선임 1 주일 내에 반드시 변경내역을 공지 (변경 전/후 내역 기재. 담당자명, 기관직통번호, 핸드폰번호, 메일주소 기재)
- 잦은 담당자 변경은 사업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되므로 유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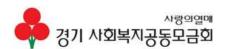
4.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안내

지원금 잔액 반납 및 환수

반납관련 유의사항(p69)

- ▶ 지원금 반납 대상
- 지원사업 종료 후의 지원금(이자발생분 포함) 잔액
- 남양주시복지재단이 특정 사유로 인해 반납을 요청한 경우
- ▶ 반납 예외
- 사업종료일 현재 총 잔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기관 잡수입 처리
- 지원금 반납 이후 발생한 이자는 기관 잡수입 처리
- ▶ 반납 및 환수 절차
- 반납계좌: 농협은행 / 301-0285-2895-61 /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
- 공동모금회로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잔액반납 공문 전송
- -반드시 기관명으로 입금

5. 사업평가 및 회계평가



배분사업 평가 및 기타사항

배분사업 평가 개요(p73)

구분	사업평가	회계평가
목적	사업수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배분금의 적정한 집행여부 평가
기준	배분의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도, 문제해결 기여도, 배분의 성과 등	모금회 지침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 발표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기준에 따른 수행여부
방법	서류 및 현장점검	서류평가
평가자	배분사업 평가지원단	회계법인
제출처	남양주시복지재단	회계법인

▶ 평가 목적

-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결과, 목적 달성 여부의 확인
- 환류를 통해 유사사업에 반영
- 배분사업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으로 현장의 의견 청취· 반영
- 배분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적절한 관리체계의 도입 유도

배분사업 평가 및 기타사항_사업

(1) 사업평가 제출 자료(p74)

- ① 결과보고서(양식), 정산보고서(양식), 사업계획서 최종본(양식)
- ② 잔액 반납 공문 및 통장사본 마지막 장('0'원이 확인된 사본)
- ③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에 관련서류 제출(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표준현금출납부 등)
- ☞ 109페이지 참조
- ④ 사업과정 및 결과 증빙자료 일체
- ▷ 모든 증빙자료를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준비함

(2) 평가자료 제출처

▷ 김은혜대리 (gkeh03@nyjwf.or.kr) 031-524-9835

사업과정	결과 증빙서류 예시
대상자관련	· 대상자선정관련 서류 : 선정요청(공문등), 선정관련자료(심사, 회의등), 선정자 서류 (신청서, 경제상황확인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등) · 참여인원 실적에 따른 참여리스트등
세부 사업관련	* 본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 사업 관련 자료를 전체 구비 ·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 시 -진행 기록 및 위원회 명단(회의비 지급 시 이력서, 통장사본 구비,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물품구입 및 공사 계약 시 -입찰자료, 구입관련 서류 등 진행과정전체에 대한 서류 · 대상자의 사례관리 또는 교육 등 개인 변화에 대한 사업지원 시 -사전사후(변화정도)를 알 수 있는 기록지, 사례상담기록 등 대상자별 관련서류 · 계획 내 단위사업별 사업 진행 관련(예: 행사, 교육 등)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 일체 -행사 사진 · 홍보 관련 -홍보물 배포 리스트, 보도자료, 홍보물 샘플 등 관련 서류 일체 · 의뢰 및 네트워크: 의뢰서 및 네트워크 기관 명단 및 회의록 · 가정방문: 가정방문기록서
목표에 따른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상 작성된 목표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 자료 구비 · 사전사후 척도 결과 및 분석내용 · 만족도 결과 분석내용 · 심사위원 평가 결과 · 관찰 기록지, 사업보고서 등

배분사업 평가 및 기타사항_회계

(1) 회계 평가 제출 자료

제출 방법	제출 자료
이메일	○ 표준현금출납부 엑셀파일 : 김은혜대리 (gkeh03@nyjwf.or.kr)
우편	 ○ 정산보고서 ○ 최종 조정사업계획서(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 ○ 통장 사본 ○ 회계장부 사본(표준현금출납부 인쇄본, 총계정원장) ○ 날짜순서로 정리된 증빙이 첨부된 결의서 원본 ○ 기타 관련 증빙서류철 원본(검토 후 수행기관에 재 송부함) ○ 각 단위 지출의 증빙은 지출 결의서에 내부기안(지출품의),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체크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순서대로 첨부하여 한 묶음으로 구성 ○ 각 지출 증빙서류는 통장/현금출납부와 상호대사가 가능하도록 통장/현금출납부 순서대로 편철 ○ 지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월 단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분하며, 증빙서류철이 너무 두꺼울 경우 두 권 이상으로 분리하여 철하되 연번을 표시토록 함 (예시: 모두 3 권일 경우, '증빙서류 3-1, 증빙서류 3-1, 증빙서류 3-3'으로 표시)

배분사업 평가 및 기타사항_회계

증빙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 ※

- 사업 평가와 관련된 서류와 회계정산 서류는 분리하여 편철하여야 함(세목별 정리 / 날짜순 아님)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배분금 관련 서류와 구분하고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배분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에 자부담금을 구분 표시하도록 함

(2) 평가자료 제출처

▷ 김은혜 대리 (gkeh03@nyjwf.or.kr) 031-524-9836

6.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안내

결과보고서제출 안내

프로그램	기능보강
▶ 결과보고서(최종) 및 잔액 반납	▶ 결과보고서(최종) 및 잔액 반납
- 제출기간 : 사업종료 후 한달 이내	- 사업종료 후 한달 이내

감사합니다

